[별지 제2호서식] <개정 2014.12.29.>

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7일

신청인	성명(법인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)	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)	
	주소(법인의 경우 주사무소 소재지)			
	연락처	전화	휴대전화	전자우편

신청 내용	① 허가번호	당초 허가기간
	② 연결 목적	
	점용장소 · 점용면적 (㎡)	
	③ 도로 종류 및 노선명	
	도로와 연결하는 다른 시설의 종류 및 명칭	
	연장 사유	

「도로법」 제52조, 제61조 및 「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」 제4조제6항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, 통로, 그 밖의 시설의 연결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도로관리청 귀하

신청인 제출서류	없음	수수료: 1,000원
유의사항	1.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에 다른 토로·통로, 그 밖의 시설을 연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(「도로법」 제114조제5호). 2. 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를 점용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, 변상금이 부과됩니다(「도로법」 제72조 및 제114조제6호). 3. 허가를 받은 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내야 하며,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도로법」 제66조 및 제117조제2항제1호). 4. 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	
작성방법	①란은 기 허가받은 허가번호를 적습니다. ②란은 휴게소 · 주유소 · 공장 · 아파트 · 진입로 등 연결 목적을 적습니다. ③란은 일반국도 노선번호를 적습니다.(예: 국도 ○○호선 등)	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 수	➔	현지조사	➔	검 토	➔	결 재	➔	허가서	➔	발 급
신청인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처리기관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(재활용품)]